

## 2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, 변경 및 휴·폐업

- 동의를뢰자가 보관된 배아 및 생식세포의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권고서식 [제9호 서식] 배아·생식세포 폐기 동의서를 작성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며,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존 기간이 경과한 후 연구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생식세포나 배아의 경우는 동의권자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.

권고서식

[제8호 서식]

배아·생식세포 폐기 동의서		
배아생성의료기관	기관명	지정번호
체외시술대상자	성명	생년월일
배우자	성명	생년월일
상담자	성명	
담당의사	성명	
<b>동결보존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</b>		
<b>배아</b>	<b>난자</b>	<b>정액 또는 정소조직</b>
난자채취일:	난자채취일:	정자채취일:
배아 수 / straws(vials)	난자 수 / straws(vials)	정액 또는 정소조직 / straws(vials)
위의 동결 보존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를 배아생성동의서에 작성한 보존기간과 달리 더 이상 보존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
동의서 작성일 :	년	월 일
	체외수정시술대상자	(서명 또는 인)
	배우자	(서명 또는 인)
	상담자	(서명 또는 인)
	담당의사	(서명 또는 인)